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5 선고 2024가단528785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

담당변호사 홍승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8.5㎡

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8.5㎡ 토지를 인도하며,

나. 9,143,535원 및 2024. 7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,51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나나

별지